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유효기간(3년) 경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2. 11)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 말소 통지 방법 규정(안 제4조의3, 4조의5)

-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등록 말소 60일 이전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문자전송으로 통지

나. 조사원의 활용 주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안 제6조)

- 조사원 활용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실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말소예정일 60일전까지 해당 사실을 농업경영체에 서면 또는 전화 또는 문자전송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말소예정일 60일전까지 해당 사실을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을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8. 12.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신설>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6조2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말소예정일 60일전까지 해당 사실을 농업경영체에 서면 또는 전화 또는 문자전송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② (생략)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농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 ----- ----- ----- -----.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신설>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공고)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말소예정일 60일전까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어업경영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지 해당사실을 어업경영체에 서면, 전화 또는 문자전송으로 알려야 한다.

② ·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제6조(조사원의 활용) -----
----- 지
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3항

-----.